

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허용 출력한계(제 47 조제 4 항 관련)

1. 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

가. 레이저광선 제한공역

- 1) 수평범위: 각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3,700 미터(2 해리)까지 확장된 공역과 이 공역으로부터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양쪽 750 미터(2,500 피트)의 폭으로 5,600 미터(3 해리)까지 연장된 공역
- 2) 수직범위: 1)에 따라 설정된 수평범위의 수직상방으로 지표로부터 600 미터(2,000 피트)까지의 공역

나. 레이저광선 위험공역

- 1) 수평범위: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8,500 미터(10 해리)까지의 공역
- 2) 수직범위: 1)에 따라 설정된 수평범위의 수직상방으로 지표로부터 3,050 미터(10,000 피트)까지의 공역

다. 레이저광선 민감공역: 레이저광선의 방사로 현맹(flash-blindness) 또는 잔상(after-image)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지정하는 공역

2. 레이저광선 허용출력한계

가. 레이저광선 제한공역: 1 제곱센티미터당 50 나노와트(nW) 이하

나. 레이저광선 위험공역: 1 제곱센티미터당 5 마이크로와트(μ W) 이하

다. 레이저광선 민감공역: 1 제곱센티미터당 100 마이크로와트(μ W) 이하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정상비행공역: 최대허용방출량(Maximum Permissible Exposure: MPE) 이하